

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전문위원 고 일 준

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2일 이종호의원 등 30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,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및 조성위원회 설치 등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자치단체의 책무(안 제3조)

- 1)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- 2) 충청북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구성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, 제천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함.
- 3)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(안 제4조 및 제5조)

- 1)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.
- 2)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,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,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, 특수목적고 및 어학타운 설립 지원, 그 밖에 제천종합연수타운 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,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3)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연수기관유치추진단 및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 설치(안 제6조 및 제7조)

- 1) 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인력과 연수타운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함.
- 2) 도지사 소속하에 연수기관유치추진단 및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
- 3) 연수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자문이 이루어지고, 연수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.

4. 검토의견

이 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,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배치 대안¹⁾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확정·발표함에 따라,

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4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5조의 재정지원이 되겠음.

1) 2003.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방침 발표(정부)
2005. 12월 진천·음성혁신도시 선정 및 3개 연수기관 제천 개별이전 결정(충청북도)
2007. 5월 진천·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(건설교통부)
⇒ 3개 연수기관 제천 분산배치 사실상 무산

충청북도가 제천종합연수타운(사업개요는 붙임 참조)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

1.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
2. 부지조성, 도로, 주차장, 상하수도,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
3.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4.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
5. 기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,

재정지원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연수기관 유치 및 홍보 등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천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며,

또한,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은 2007년 10월 9일 충청북도-제천시-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“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(협약서는 붙임 참조)”에 포함된 내용으로, 이견은 없음.

다만, 안 제5조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“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”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붙임 :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07년 ~ 2013년(5년)
- 위 치 : 제천시 신월동, 봉양읍 미당리 일원
- 조성규모 : 2.98km²(1차 개발 1.69km², 2차 개발 1.29km²)
- 사 업 비 : 6,000억원(부지조성 3,800, 보상비 2,200)
-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

□ 추진상황

- '07.10. 9 MOU체결(도지사, 시장, 주택공사)
- '07.11.29 수도권 연수기관유치설명회
- '08. 1.25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발주(주공)
 - 제천종합연수타운 기본구상안 수립
 - 개발 수요조사 분석, 종합연수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 등

□ 향후계획

- '08. 3월 제천종합연수타운 지원조례 제정
- '08. 9월 수도권 연수기관유치설명회
- '09.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
- '09.10월 실시계획 수립
- '09.11월 종합연수타운 착공
- ※ 연수기관 유치 활동은 연중 계속 추진

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 본 협 약 서

충청북도, 제천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.

1. 충북 제천시 신월동·봉양읍 미당리 일원 2.98km²에 제천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한다. 1단계로 1.69km²를 조성하되 조성면적은 대한주택공사의 용역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2.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되 1단계 사업의 경우 2007년중에 착수하고 대한주택공사와 제천시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한다.
3. 가칭 '공공기관종합연수원' 설치·운영 등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참여한다.
4. 충청북도와 제천시에서는
 - ① '수도권 연수기관 유치설명회'를 금년 11월 이전 서울에서 개최한다.
 - ② 연수시설부지 매각손실범위 내에서 지구내·외의 기반시설(도로, 공원 등)을 건설한다.

5. 충청북도에서는

- ① 3개 기관 이상의 연수시설을 유치하고, 특목고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.
- ② 충청북도는 가칭 “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제정하여 적극 시행한다.

6. 제천시에서는

- ① 법원·검찰청사,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4개 이상의 기관 및 3개 기관 이상의 연수시설을 유치한다. 시청사 이전은 용역 과정에서 검토한다.
- ② 부지 분양가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및 상·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분담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.

7. 본 기본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2007년 10월 9일



충청북도지사

정우택



충청북도 제천시장

엄태영



대한주택공사 사장

박세흠